



용인 흥덕지구 동원로알듀크 입주자 모집공고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용인시청 주택과 - 11544호(2007. 12. 2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모바일 청약신청 서비스 안내
 -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 신청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모바일(국민은행에 한함) 청약서비스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계약체결가능일로부터 10년간 전매가 제한되며, 본 아파트에 당첨되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간 1,2,3순위 청약이 제한됨

구분	국민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대상	공동	• 1·2순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인터넷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 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KB 모바일	• 국민은행에서 Mbank(SK텔레콤)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신 분 [Mbank 전용 휴대폰 중 WIP폰 기종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인터넷청약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l2you.com) 접속
	KB 모바일	• SKT : Mbank 접속 → KB StarNet → 모바일주택청약 → PIN 입력 → 주택청약신청 • KTF, LGT : KB 뱅킹 → 모바일주택청약 → PIN 입력 → 주택청약신청	

- ◆ 공급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 흥덕택지개발지구 2-6블럭 (Ab6)
- ◆ 공급 규모 : 아파트 20층 9개동 72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 대지면적 : 46,055㎡ (APT : 45,057㎡ 근생 : 988㎡)
-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단위:㎡, 원)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관리 번호	주택형	세대별 주택면적			대지 지분	공급호수			층수	층별 세대 수	주택가격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잔금 (입주시)				
	용인시	수도권			전용	주거공용	계		기타공용 (주차장)	계약면적	계			특별 3차년	일반 기타	대지비		건축비	분양가격	1차 (08.4.15)	2차 (08.8.15)	3차 (08.12.15)	4차 (09.4.15)		5차 (09.9.15)	6차 (09.12.15)		
																											18	18
A, B, C, D, E, F	21733-01	21734-01	2008000003010	120,0840	84,6898	35,3942	120,0840	52,0450 (44,119)	172,1290	62,4958	360	11	36	313	1층	18	169,000,767	164,149,233	333,150,000	66,630,000	33,310,000	33,310,000	33,310,000	33,310,000	33,310,000	33,310,000	66,660,000	
															2층	18	169,000,767	173,799,233	342,800,000	68,560,000	34,280,000	34,280,000	34,280,000	34,280,000	34,280,000	34,280,000	34,280,000	68,560,000
															기타층	324	169,000,767	183,399,233	352,400,000	70,480,000	35,240,000	35,240,000	35,240,000	35,240,000	35,240,000	35,240,000	70,480,000	
	21733-02	21734-02	2008000003020	120,4044	84,9157	35,4887	120,4044	52,1837 (44,2295)	172,5881	62,6625	360	11	36	313	1층	18	169,451,556	160,648,444	330,100,000	66,020,000	33,010,000	33,010,000	33,010,000	33,010,000	33,010,000	33,010,000	66,020,000	
															2층	18	169,451,556	170,348,444	339,800,000	67,960,000	33,980,000	33,980,000	33,980,000	33,980,000	33,980,000	33,980,000	67,960,000	
															기타층	324	169,451,556	179,948,444	349,400,000	69,880,000	34,940,000	34,940,000	34,940,000	34,940,000	34,940,000	69,880,000		

- 상기 형별 면적은 대표면적을 표기한 것으로 101동 102호 1층 1세대는 면적 단수 정리로 인해 120.3972㎡ 형으로 공급되며, 공용면적 및 대지지분에 일부 차이가 있음.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총금액을 기준으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으로서 각 주택형별 공히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고임.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은 관리소, 노년층,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면적임.
- 특별공급은 청약인·국가보훈대상자·장애인 등에 건설량의 (10%) 공급되며, 무주택 3차년 특별공급은 건설량의 3%로 당사에서 직접 모델하우스 접수를 통해 분양 대상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은 청약인·국가보훈대상자·장애인 등에 공급되며, 무주택 3차년 특별공급은 당사에서 직접 모델하우스 접수를 통해 분양 대상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및 신청미달분은 신청형별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미달 신청물량은 용인사수도권 30/70의 비율로 배분하되 용인시의 30% 물량을 먼저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함. (단,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반환.)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음.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입주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 주택가격(분양대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입주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시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이 내용은 은행저장 계좌로 납부시에도 동일함.
- 사업주체가 정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 특별공급
 - 1) 무주택 3차년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 1. 2)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2020세 미만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자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제한 기한내에 있는 자는 제외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주로 간주함.
 - 3차년 특별공급은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는 인구비율(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의 2005년도 내국인 인구통계에 의함)에 따라 서울시 거주자에게 40%, 인천시 거주자에게 10%를 각각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공급세대수 [총 공급세대수의 3% 범위 이내].

구분	계	120,0840	120,4044	비고
경기도	12	6	6	
서울시	8	4	4	
인천시	2	1	1	
합계	22	11	11	

- 구비서류
 - ① 특별공급신청서 (접수장소에 비치).
 - ② 주민등록등본 1통 (배우자와 별도 등재시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③ 주민등록초본 1통 (본인이 인정보고자 하는 수도권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기간이 주민등록등본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④ 배점기준표 (접수장소에 비치).
 - ⑤ 호적등본 1통 (이래 해당자에 한함)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 ⑥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자에 한함).
 - ⑦ 무주택사익(접수장소에 비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도장(본인 신청서 서명기능)
 - ⑧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3년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본)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기간 선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건본주택 및 시행자에게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순위 배점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해당 사항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자녀수 (1)	미성년 자녀	4자녀 이상	40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	
		3자녀 이상	35		
	영유아	2명 이상	10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1명	5		
세대구성 (2)	10	3세대 이상	10	-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2세대	5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을 구성 .	
무주택기간 (3)	20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 이면서 무주택 10년 이상	2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 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산정 .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 이면서 무주택 5년 이상	15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	
		무주택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기간 (4)	20	10년 이상	20	-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 시는 특별시·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봄 .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1), (2) :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으로 확인, (3) : 건교부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2) 기타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자(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해당점 제한기한이 있는 자는 제외) .
- 구비서류
-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 1. 2) 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납부증명서,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등) . ②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증명서(주택공급신청용)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
- ③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 인정서 및 추천서(만 인정장애인 증명서, 복지카드 등 기타 서류 불가) . ④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및 인정서 1통 . ⑤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자(양세접수장소에 비치) .
- ⑥ 장애인등록증 사본(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에 한함) .

◆ 일반공급

- 일반 공급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 1. 2) 현재 용인시 주택건설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인 자 .
- 본 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건설되는 주택으로 용인시에 1년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에게 30%를 우선공급하며, 70%를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함(2007. 1. 3 이후 용인시 전입자는 수도권 거주자로 분류됨) .
- 용인시 일반공급, 수도권 일반공급순으로 포함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며, 용인시 일반공급 신청자 중 낙첨자는 수도권 일반공급에 당첨자를 선정함 .

◆ 청약 가점제 우선공급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2조 2에 의거 1, 2순위 일반공급물량의 75%를 가점제로 공급함 . • 가점점수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별표1에 의거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 가점제의 적용기준 .

구 분	세부내용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배우자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공유자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리고 입주자(배우자 포함)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배우자 포함)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입주자(배우자 포함)의 연령이 30세 이후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호적등본에 혼인신고일자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다만, 입주자(배우자 포함) 또는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다 .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배우자 포함)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에 한함)을 말한다)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다만, 입주자(배우자 포함)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 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배우자 포함)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배우자 포함)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입주자(배우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 처리한다 . 입주자(배우자 포함)가 30세 이상은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경우 30세 이상의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본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입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배우자 포함)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배우자 포함)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가점점수 선정기준표

구 분	가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1년 미만(무주택자에 한함)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등 - 호적등본 (만 30세 이전에 결혼할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가입자 본인)	5	4명	25	- 주민등록등본 - 호적등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	
③ 입주자(배우자 포함) 가입기간	17	6개월 이상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으로 계산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④ 감 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되고, 2순위에서 가점제로 신청할 경우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 처리 .		•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 처리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④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건보주택 및 시행자에게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해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 ※ 상기 기재사항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공급계약이 해제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공 통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 1. 2.)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이를 세대주로 간주함 .
- 상기 주택의 당첨자(특별공급, 3자녀 특별공급 포함)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청약자 본인(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 .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시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 과거 분양상한제 적용주택에 기등첨자 된 자 또는 기등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등첨제한 기간이 경과되어야만 1, 2, 3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

◆ 순위별 청약자격 및 접수일

1) 순위별 신청자격

구분	거주구분	순위	면적구분	청약관련 예금 및 신청자격
민 영 주 택	용인시 · 수도권	특별 공급	전주택형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특별공급으로서, 무주택세대주에게 건설량의 10%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함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만20세 미만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자(재당첨금지 적용자 제외)에게 건설량의 3%를 특별공급하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선정함 .
		1순위	가점제 · 추첨제 신청자격	• 가점제 :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
				• 추첨제 : 주택을 소유한 세대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 신청서 자동으로 추첨제 1순위 대상으로 접수됨 .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 수에 대하여 감점은 적용됨 .
				• 청약자는 가점제 / 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전주택형	• 각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 이상이 경과된 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납입잔액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가점제 · 추첨제 신청자격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불입한 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85 ~ 102㎡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 1980. 8. 29 이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의 재항저축에 가입하였거나 1981. 5. 22 이전 국민주택 청약부금 가입자중 청약자격 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3순위	전주택형	• 1순위자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이 불가함 .		
		•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청약자 본인, 배우자(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중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당첨사실 포함)된 세대에 속한 분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한 분 . - 가점제로 입주를 선정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사실을 포함)한 분 . - 2002. 9. 5 이후 청약관련 예금에 가입한 분 중 세대주가 아닌 분 .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는 예외적으로 2순위 청약 가능함 (단, 1주택 소유로 인한 가점제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는 2순위 청약 불가) .		
2순위	전주택형	• 별도 가점제 신청자격 제한 없음 (모든 청약자 가점제로 청약 접수) .		
		• 청약자는 가점제 / 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 .		
3순위	전주택형	• 1순위자 중 상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 .		
		• 각주택형에 청약 신청이 가능한 청약예 · 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3순위	전주택형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 청약가점제 자격신청은 1, 2순위에만 해당되며, 가점제 신청자 중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 ※하위 또는 척으로 과거 5년 이내에 당첨사실이 있는 자가 1순위로 신청하여 당첨시에는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5조의3 4항 관련)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기타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 · 군지역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 과거 당첨사실 조회방법 :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센터 (www.ap2you.com)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에서 과거 당첨사실 조회 선택 → 과거 5년간 당첨사실 및 분양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조회 → 조회기준일 입력 → 공인인증서 인증 → 조회

2) 청약 접수기간 및 장소

구분	순위	거주지	접수일자	신청장소 및 시간	당첨자발표
민 영 주 택	특별공급	용인시/수도권	2008. 1. 7 (月)	• 장소 : 견본주택 • 시간 : 10:00 ~ 14:00	• 일시 : 2008. 1. 7. 17: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1순위	용인시/수도권	2008. 1. 8(火)	• 장소 : 청약관련예금 가입은행 인터넷(모바일 포함) 청약 • 청약관련 예금 가입은행 인터넷(ARS, 모바일 포함) 청약 - 인터넷 : 국민은행 (www.kbstar.com) 금융결제원 (www.ap2you.com) - 모바일(국민은행에 한함) : MBANK, Kbank, BankOn	• 일시 : 2008. 1. 16 (水)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2순위	용인시/수도권	2008. 1. 9(水)	• 시간 : 08:30 ~ 18:00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순위	용인시/수도권	2008. 1. 10(木)	• 장소 : 국민은행 본 · 지점 • 시간 : 08:30 ~ 18:00	

※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청약자 등에 대하여는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가능하며, 대리 신청시 가족에 한하여 청구신청 가능 (청구 접수시간 : 09:30 ~ 16:30) .

- 청약신청은 신청형태에 따라 신청접수 후 당첨자를 선정함
- 용인시 거주자는 용인시 해당 접수일 접수분에 대해서만 용인시거주자로 인정하며 수도권 거주자 접수일 신청자는 용인시거주자 요건을 갖추었어도 수도권 거주자로만 인정함 .
- 세대주 기간은 주민등록등 · 초본을 기준으로 확인, 청약관련예금 납입잔액 및 회차는 국민주택공급신청서가입 은행에서 발급를 기준으로 확인함 .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태에 따라 동별, 층별, 항별, 흑세대 구분없이 일괄 추첨함 .
- 당첨자는 지정계약일에 계약하여야 함
- 신청형태로 공급호수의 20% 범위 안에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여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시 예비순위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함 .
- 예비 입주자의 선정은 지역우선, 일반공급 구분없이 당해 신청형태 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청약 순위에 따라 선정함 .
- 특별공급 물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며 미달 또는 부족격차의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 3순위 청약신청금

구 분	전주택형	신청금 납부 방법
청약신청금	500만원	가급적 수도권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2008. 1. 17) 이후 평일 09:30 ~ 16:30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 환불장소 : 청약신청한 국민은행 본 · 지점
- ▶ 제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 ▶ 구비서류 : ① 본인 또는 배우자 환불시 : 주택공급신청접수(영수)증(당첨자는 사본 제출), 본인확인증표(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청서 사용한 인장 또는 본인 · 배우자서명 (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시에 한함) .
② 제3자 대리환불시 : 상기 본인 환불시 구비서류 이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 위임권) 1통, 청약자의 인감도장, 제3자의 본인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청약자 본인의 본인확인증표 제출 생략 가능 .
- ▶ 제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나, 청약접수한 국민은행 본 · 지점에서 환불받아 계약 체결하여야 함 [단, 지정계약청약자 본인의 국민은행 계좌에 한함]로 이체 신청한 분은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자동이체됨] .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시행자에게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2, 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주택형별 신청자 및 입회인 입회회에 각 주택형별로 당사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에 의해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추후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로 발생하는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무주택 3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게 공급주택형별 3%를 특별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 선정함. • 각 주택형별 신청자 및 입회인 입회회에 각 주택형별로 당사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에 의해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하고 또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선정함. • 추후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로 발생하는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가점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75%를 가점제 공급신청자에게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중 낙첨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해당지역 동일 순위자 등과 함께 전세대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은행 컴퓨터 추첨에 의해 청약관련예금 가입은행 구분 없이 각 순위별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각 순위별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윤인시 1년이상 거주자 신청자중 낙첨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수도권 거주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입주자모집 결과 경쟁이 있는 경우 각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20% 범위내에서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여 미계약세대 또는 계약취소세대 발생시 예비당첨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예비 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일에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특별공급 당첨자 중 일반공급에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인터넷, 모바일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안내

구분		국민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 가입하신 분
인터넷	이용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당첨확인 → 주택별 조회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l2you.com)접속 → 인터넷 청약 → 당첨 확인
	이용기간	2008. 1. 16. ~ 2008. 1. 25. (10일간)	
전화(ARS)	이용방법	먼저 이용 전화번호를 누른후 안내멘트에 따라 청약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등을 연속하여 누름	
	전화번호	☎ 1588-9999 (서비스번호 : 70)	☎ 1369 (서비스코드 : 5#)
이용기간		2008. 1. 16. ~ 2008. 1. 25. (10일간)	
KB모바일	이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T : Mbank 접속 → KB StarNet → 모바일주택청약 → PIN 입력 → 당첨확인 • KTF, LGT : KB 뱅킹 → 모바일주택청약 → PIN 입력 → 당첨확인 	-
	이용기간	2008. 1. 16. ~ 2008. 1. 25. (10일간)	-

◆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 3자녀 특별공급 대상자 : 당첨여부 미확정으로 일반공급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당첨시 3자녀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
- 기타 특별공급 대상자 (철거민, 보훈대상자 등) : 세대 1주택만 계약이 가능하므로 일반청약과 중복신청 불가하며, 신청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불가, 청약통장 효력 상실 및 재당첨 제한 적용.
- 일반공급의 경우 : 청약신청은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중복신청 : 당첨시 모두 계약 불가, 청약통장 효력 상실 및 재당첨 제한 적용.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정당 당첨자) : 2008. 1. 21 (月) ~ 2008. 1. 25 (金) (5일간, 09:30 ~ 16:30)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재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후 계약을 체결함.

◆ 계약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사항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인터넷·ARS·모바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분은 제출 생략).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아파트 계약용) 및 인감도장. • 계약금 (수도권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본인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 (거주지역, 세대주기간, 세대주 여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1통(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호적등본 1통 추가 제출). - 배우자와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 호적등본 1통. - 배우자의 호적등본 1통(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 - 장애인 수첩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장애인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특별공급 1순위 당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등기부등본(등기접수일기준)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차리일 기준, 가옥대장 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기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재당첨 금지 등 부적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당첨 금지 등의 사유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당첨지에 대한 소명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 구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계약장소에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05. 7. 1 주민등록번호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조건 등

- 계약체결 이후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함.
 - 1·2순위 가점제 당첨자 중 청약신청시 가점점수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명될 경우 .
 - 1순위 추첨제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로, 판명될 경우 .
 - 1순위(가점·추첨제)당첨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 .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자 .
 - [2002. 9. 5 이후 청약예금(부금) 가입자에 한함] .
 - 1·2·3순위 당첨자 중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입신청 된 자 또는 기입신청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로, 재당첨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2002. 9. 5 이후 청약통장 가입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분 .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타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기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사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을 무효로 하고, 기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 신청인에게 귀속됨 .
- 당 아파트 배치구조 또는 동·호수별 위치 및 인근 아파트 단지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소수점 이하 면적이 변동될 수 있음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 금액 없음)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7조를 준용함 .

◆ 세대주 인정기간 상정에 관한 유의사항

- 세대주 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하여 상정함.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한다 .
-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을 변경 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한다 .
 - ①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
 - ②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
 - ③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

◆ 주택소유에 대한 유의사항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 됨 .
- 주택매매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 주택공유자본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로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3항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자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 ②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 88㎡이하의 단독주택 .
 -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 ④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⑤ 20㎡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1호 또는 1세대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⑥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⑦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소형·저가주택 1호를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별표 1호 가목 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60㎡초과 인명주택 또는 민간건설총량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등기상 보유특례) .
 - ①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현재 소형·저가주택을 10년미만 보유한 경우 : 특례에 해당 안됨(따라서 유주택자이며 종전 무주택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 ② (현재 : 무주택자)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두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3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 2007. 8.31 이전에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 부대 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어린이 놀이대, 주민공동시설, 노인정 등 .

◆ 입주 예정일

- 2010년 7월 (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통보) .
- 실입주일이 입주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더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 입주자 사전점검 실시

- 당사는 입주개시 약 1 ~ 2개월전에 도배·도장·조경공사 등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 입주자 여러분이 직접 하차여부를 사전 점검 행사를 실시합니다.
- 점검 방법 등은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입주자사전점검운영요령'에 따름 .

◆ 하차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유의사항

- 1~3순위 및 특별공급자격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되고, 재당첨금지 및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1, 2순위 당첨자함 .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는 재확인 기간내에 증명서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나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평형 환산방법 : 형별면적(㎡)×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평플렛 등에 표기된 "평"단위 면적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소수점 이하 단수처리 과정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자접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가 대지공유자본은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 본 지구의 외곽의 도로 등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서 설치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 .
- 견본주택은 당첨자 발표일 익일부터 공개하며, 일정 기간 공개 후 철거하여 철거전 비디오 또는 사진으로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 및 사이버모델하우스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음.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분양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광역위치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도, 각 주택형별 입체평면도 및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이미지컷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신청 및 계약시 각종 상황위인테러리, 부동산 중개 등은 당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임 .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당사 주택영업팀에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통보하시기 바람.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발 통보함 .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분류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21호)에 따라 보상 가능함 .
- 당 아파트는 용인 ~ 서울간 고속도로 진입도로부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용인 ~ 서울간 고속도로는 2009 년 9월 이후에 개설안로될 예정임 .
- 당 아파트 남서쪽에 중학교 부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중학교 부지는 당 아파트 부지보다 높이 위치하여 일부 세대의 조망권이 제한될 수 있음 .
- 당 아파트 남측으로 도시지원시설 및 폐가를 처리사실이 위치할 예정이며, 동쪽으로는 변전소가 설치 예정임 .
- 당 아파트 동측으로 한국주택건설주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이 위치하고 있으며, 진출입 위치가 지구단위계획 허용구간내에 배치되어 다소 불편할 수 있음 .
- 당 아파트 동측으로 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도서관이 위치할 예정임
- 당 아파트 주변으로는 완충녹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구간으로 완충녹지외의 레벨차이로 자연성 쌓기가 이루어질 예정임 .
- 주차입구 경비실이 출구방향에 배치되어 관리상 다소 불편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에서 직접 단지로의 출입이 불가하여 이용에 불편할 수 있음 .
- 단지내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3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단지 중앙의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평상시에는 출입이 통제됨 .
- 동 택지개발지구는 현재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인 설립계획 중이며, 나머지 초등학교 1곳(Ab5 공동주택용지 인근), 중학교 1곳(B5호 어린이공원 인근)은 향후 학생수용 여건에 따라 설립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 또한, Ab5 공동주택용지 인근에 계획중인 초등학교 1곳의 개교 내용에 대하여는 용인시 교육청에 별도 문의하여야 함 .
- 흥덕지구 주변도로인 용인-서울(구, 영덕-양재)간 도로는 별도의 통행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유료도로임
- 흥덕지구내 공동주택의 마을이름은 흥덕지구 경관계획에 의거 "흥덕마을"로 정하였으나,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아파트 각 동 지하에는 주민공동시설 및 재활용창고 등이 설치될 예정임 .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함 .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시행처에게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용자지원 안내**

- 분양대금 중 중도금 일부에 대하여는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앞선하며, 자세한 내용은 당사 분양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납부계좌 : 국민은행 414301-01-078831 [예금주 : (주)동원종합건설]
- 납부방법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해당은행에서 무통장 입금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등에 대해 별도 통보하지 않음).
- 무통장 입금시에 동·호수를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 분	감 리 회 사	감 리 금 액	비 고
건축공사	(주)우림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1,549,805,581원	부가세 포함
전기공사	(주)수양엔지니어링 기술사사무소	491,530,016원	
통신공사	(주)세종기술단	46,200,000원	
소방공사	(주)세종기술단	169,400,000원	

◆ **본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주)의 주택분양보증을 받은 주택임**

구 분	보 증 금 액(원)	보 증 기 간
제02312007-101-0005000호	201,286,260,000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일 포함)까지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입주금의 납부**

- 보증의 범위 : 주택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호 나목에 따라 주 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입주금의 납부(제4조)
 - 1) 보증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등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자체상금
 - 13)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홀오도, 발코니샤시(미너스오피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와 관련한 금액
 -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2)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4조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4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중 전체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이 주택은 주택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13조의3의 규정에 따른 분양가 주요항목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전용면적 85㎡이하	합 계	251,608,500,000원	
	택지비	121,842,836,280원	
	건 축 비	직접공사비	60,266,893,785원
		간접공사비	22,290,494,962원
		설 계 비	768,167,400원
		감 리 비	2,241,535,597원
		부 대 비	6,636,446,820원
		가 산 비	37,562,125,156원

※상기 항목별 금액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산정된 사전 추정가격으로서, 준공시 소요금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비**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기본형	확장형	확장공사비	부분별 공사비	비 고
120,0840	5,957,000원	28,491,000원	22,534,000원	• 거실 : 8,149,000원 • 안방 : 7,409,000원 • 침실1 : 1,985,000원 • 주방 : 3,132,000원 • 침실2 : 1,859,000원	
120,4044	5,724,000원	25,534,000원	19,810,000원	• 거실 : 7,584,000원 • 안방 : 4,833,000원 • 침실1 : 2,094,000원 • 주방 : 3,167,000원 • 침실2 : 2,132,000원	

◆ 별도품목 내역표

(단위 : 원)

구 분	별도품목현황	기본마감	별도품목금액		비 고
			120,0840	120,4044	
현 관	디지털도어록(지문형, H/N연동)	일반도어록	350,000	350,000	
	수납장(시스템 + 문틀)	미설치	650,000	-	
안 방	화장대	미설치	730,000	850,000	
	벽걸이 LCD TV(40인치)	미설치	1,350,000	1,350,000	
침실 1	불박이장	미설치	800,000	820,000	
침실 2	불박이장	미설치	800,000	820,000	
주 방	무빙오븐후드	렌지후드	1,200,000	1,200,000	
	와이드 가스쿡탑(4구)	가스쿡탑 3구	300,000	300,000	
	개별정수기	미설치	400,000	400,000	
	음식물쓰레기 건조기	미설치	403,000	403,000	
	식기세척기(12인용)	수납장	480,000	480,000	
	김치냉장고(101리터)	수납장	500,000	500,000	
	프리블세척기	미설치	350,000	350,000	
	행주도마살균기	수납장	132,000	132,000	
	절수기(원터치전자밸브)	미설치	200,000	200,000	
	주방액정TV폰(7인치)	라디오폰	450,000	450,000	
	*주방가구특화	벽체타일 시공, 추가 가구 미설치	1,280,000	1,600,000	
	욕 실	비데(부부욕실)	미설치	490,000	490,000
비데(공용욕실)		미설치	490,000	490,000	
월풀욕조 및 전후면 특화		일반욕조	2,500,000	2,500,000	
와이드 욕실장		ABS욕실장	300,000	290,000	
기 타	*거실장	미설치	920,000	920,000	
	*시스템에어컨(거실, 주방, 안방, 침실1·2)	미설치	7,000,000	7,000,000	
합 계			22,075,000	21,895,000	

※ * 표시된 주방가구특화, 거실장, 시스템에어컨(거실, 주방, 안방, 침실1·2)은 발코니확장 신청세대에 한해 선택 가능함. ※ 상기 비용은 마감자재 변경 및 제품의 품질·품귀 등의 사유로 조절될 경우 동질 이상의 품질 및 기능으로 조정될 수 있음.

- ◆ 시행·시공 : 주식회사 동원종합건설 [사업자등록번호 604-81-12796]
- ◆ 견본주택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53번지 (한국주택협회 주택전시관 1층 Tel. 031 - 711 - 0002)
- ◆ 사이버 모델하우스 : www.dongwonapt.co.kr

청약가점제 안내

◆ 청약가점제 적용주택 및 청약방식

주택규모, 유형	대 상	청약가점제 청약방식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	청약부금 / 청약예금	- 가점제 방식 : 75% - 추첨 방식 : 25%
전용면적 85㎡초과 주택	청약예금	- 가점제 방식 : 50% - 추첨 방식 : 50%

※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되,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 함

◆ 「가점제방식」의 주택소유에 따른 청약순위

- ① 무주택자 :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
- ② 1주택을 소유한 경우 : 가점제 청약 2순위 자격 (가점제 청약 1순위 불가)
- ③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 가점제 청약 2순위 자격이나, 소유한 각 주택마다 5점씩 감점 적용
 - ※ 「추첨제방식」의 무주택자 청약순위
 - 1주택 소유한 경우 : 추첨제 청약순위 자격
 - 2주택 이상인 경우 : 추첨제 청약2순위 자격

- 세대원의 부양가족 해당여부 판단방법
-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가입자가 세대주여야 함) :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 점수를 받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됨)
- 직계비속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미혼자녀로 한정됨
 - ※ 만30세 이상의 미혼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 점수를 받음
 -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 별도 세대 구성시 :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 「청약가점제」 점수 산정 기준

① 가점항목

3개 항목 - 무주택기간(32점) + 부양가족수(35점) + 입주자저축가입기간(17점) = 총점 84점

가. 무주택 기간 계산방법

- 「가입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청약통장 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되, 가입자가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는 혼인신고일 부터 계산함
-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일정기간 주택을 소유하여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후 최근 무주택자가 된 이후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함
-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 별도 세대 구성시 :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및 주택대 간주사례의 경우에 관련 증명서류 확인

나. 부양가족수 계산방법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을 대상으로 판단하며, 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까지 계산

② 감점항목 (2개 항목)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가점제청약 2순위로 주택공급 신청하는 경우 위 각각의 경우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에 따라 감점됨

◆ 인터넷 청약

-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②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에 해당되며, 당첨자 결정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므로, 관련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 :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청약가점제 관련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dt.go.kr)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